「KB Safe플랜 적금」특약

제1조 적용범위

KB Safe플랜 적금(이하 "이 적금"이라 합니다)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적립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가입대상

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합니다. 단, 공동명의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.

제3조 예금과목 및 계약기간

이 적금의 예금과목은 정기적금으로 하며,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.

제4조 저축방법 및 저축한도

- ① 이 적금의 저축금은 초회 1만원 이상 월3백만원 이내에서 원단위로 자유롭게 저축 가능합니다.
- ② 이 적금의 제6조 제①항에 의한 재예치금과「KB Safe플랜 이체 특약」에 의한 'KB Safe플랜 이체' 시에는 제①항의 저축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 단, 'KB Safe플랜 이체'에 의한 저축은 1회 3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.

제5조 이 자

이 적금의 이자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한 이율로 셈하여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하고, 재예치된 계좌는 재예치된 날을 가입일로 하여 적용이율을 정합니다.

제6조 적금의 운용

- ① 이 적금은 가입 시 등 재예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세금을 공제한 해지 원금과 이자를 초회 저축금으로 하여 당초의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반복(1년 단위로 4회)하여 재예치합니다. 단, 압류 등 사고신고 계좌 및 만기 자동재예치를 신청하지 않은 계좌는 재예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② 자동재예치시 재예치 통지를 요청한 고객에게만 고객이 신청한 방법(SMS 또는 이메일)으로 통지합니다.
- ③ 이 적금은 세금우대종합저축 또는 생계형저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가입한 계좌가 재예치 시고객이 지정한 세금우대종합저축 또는 생계형저축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하여 재예치합니다.
- ④ 이 적금은 은행의 사정에 의해 판매중단될 경우 판매중단일 이후 만기 도래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자동 재예치하지 않습니다.

제7조 예금의 일부인출

- ① 이 적금은 재예치된 계좌의 재예치금(이자원가액 포함) 중 1만원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 중에 1만원 단위로 해지를 포함하여 3회만 일부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.
- ② 재예치일로부터 일부인출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한 중도해지 이율로 셈한 이자를 일부인출금액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
제8조 약관변경

본 특약의 내용은 은행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은행이 본 특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·안내합니다.